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검 토 보 고 서

□ 일 반 회 계

2025. 8.

국회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 문 위 원 임 명 현

목 차

Ⅰ.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개요 ····· 1

1. 총 괄 ····· 1

가.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 1

나. 2024회계연도 세출 및 지출 결산 ····· 1

2. 일반회계 ····· 2

가. 세입 결산 ····· 2

나. 세출 결산 ····· 3

3. 과학기술진흥기금 ····· 5

가. 세입 결산 ····· 5

나. 세출 결산 ····· 5

4. 예비비 ····· 6

가. 2024년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 6

5. 재무재표 ····· 7

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 7

나.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재무제표 ····· 8

Ⅱ.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검토의견 ····· 12

(1)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7118-251): 예비비로 편성된 일반용역비의 전용 및 정책연구비 전액 이월 부적절 ····· 12

(2)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1333-302): 사업 집행관리 체계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 이월 부적절 ····· 19

(3)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1339-301): 비 R&D 사업의 출연금 이월 부적절 ····· 25

(4)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1339-302): 비 R&D 사업의 출연금 이월 부적절 ····· 31

(5)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1343-301):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하여 연구협약을 체결 부적절 ····· 37

(6)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R&D)(1733-306): 종료사업에 대한 이관 부적절 ····· 42

(7) 우주항공 정보화(7123-250): 예비비에 대한 집행 관리 부적절 ····· 46

Ⅰ.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개요

1. 총 괄

가.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 우주항공청의 2024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25억 6,600만원으로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음.

<2024회계연도 세입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 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예 산	-	2,566	2,566	-	-	100.0
o 일반회계	-	2,566	2,566	-	-	100.0

나. 2024회계연도 세출 및 지출 결산

○ 우주항공청의 2024회계연도 세출 및 지출 예산현액은 7,597억 84백만원이고, 집행액은 7,362억 34백만원으로 96.9%를 집행하였음.

<2024회계연도 세출 및 지출 결산 총괄>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예산현액 (A)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집행률 (B/A)
예 산	693,267	759,784	736,234	2,368	21,182	96.9%
o 일반회계	687,491	754,008	730,458	2,368	21,182	96.9%
o 과학기술진흥기금	5,776	5,776	5,776	-	-	100.0%

2. 일반회계

가. 세입 결산

○ 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징수결정액은 25억 6,600만원으로 전액 수납(수납률 100.0%)되었고, 불납결손액과 미수납액은 없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 결산>

(단위: 백만원, %)

구 분	예산액	징수 결정액(A)	수납액 (B)	불납 결손액	미수납액	수납률 (B/A)
합 계	-	2,566	2,566	-	-	100.0
재산수입 (토지대여료, 이자수입 등)	-	1,250	1,250	-	-	100.0
경상이전수입 (과태료, 과징금 등)	-	1	1	-	-	100.0
기타경상이전수입 (면허료 및 수수료 등)	-	1,315	1,315	-	-	100.0

○ 주요 수납내역을 살펴보면, 과기정통부에서 이체된 우주 관련 사업의 과년도 집행잔액 반납으로 인한 기타경상이전수입(13억 15백만원)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함. 그 밖에 이체사업에 대한 과년도 이자수입 12억 48백만원 등이 수납됨.

주요 수납내역	
- 과기정통부 우주관련 이체사업의 집행잔액 반납	13억 15백만원
- 이체사업에 대한 발생이자 등	12억 48백만원
- 과태료	1백만원
- 토지대여료	2백만원

나. 세출 결산

○ 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예산현액은 7,540억 800만원으로, 이 중 7,304억 5,800만원을 집행하고, 23억 6,800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211억 8,200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출 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687,491	-	754,008	730,458	2,368	21,182

(1) 이용・전용액

○ 우주항공청은 2024회계연도에 일반회계 예산 집행과정에서 9억 4,200만원을 전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이체·이용·전용 규모>

(단위: 백만원)

구 분	이 체	이 용	전 용
2024년도	395,308	0	± 942

주요 전용 내역	
- 공사비 부족액	461백만원
- 자산취득비 부족액	223백만원
- 정책연구비 부족액	180백만원

(2) 다음연도 이월액

○ 2024회계연도 일반회계 예산 중 계약기간이 완료되지 않은 공사비·일반연구비 등 미지급금 23억 6,800만원을 이월하였음.

3. 과학기술진흥기금

가. 세입 결산

○ 해당 없음.

나. 세출 결산

○ 우주항공청 소관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예산현액은 57억 7,600만원으로 전액 집행되었음.

<2024회계연도 과학기술진흥기금 지출 결산>

(단위: 백만원)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현액	집행액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5,776	-	5,776	5,776	-	-

4. 예비비

가. 2024년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현황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부터 우주항공청 출범(24.5.27)에 따른 조직 개편 목적예비비 498억 7백만원을 이체받았음.

○ 주요 지출내역으로는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에 80억원이 배정되어 전액 집행하였으며, 기본경비에 418억 7백만원이 배정되어 303억 87백만원을 집행하고 23억 69백만원은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으며, 90억 51백만원은 불용하였음.

<2024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내역>

(단위: 백만원)

구 분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예비비	이용	전용	이체	예산 현액	지출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합 계	-	-	-	-	-	49,807	49,807	38,387	2,369	9,051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	-	-	-	-	8,000	8,000	8,000	-	-
기본경비	-	-	-	-	-	41,807	41,807	30,387	2,369	9,051

5. 재무재표

가. 재무제표에 대한 설명

○ 정부는 「국가회계법」 제14조에 따라 2011회계연도 결산부터 재무제표를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발생주의·복식부기에 의한 재무결산정보를 제공하여 재정정보의 신뢰성 및 통제기능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임. 프로그램별 원가계산 및 성과측정을 통해 재정사업에 대한 성과평가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도 있음.

○ 재무제표는 재정상태표, 재정운영표, 순자산변동표로 구성되어 있음.

- 재정상태표는 기업에서 말하는 대차대조표 또는 재무상태표를 의미하며, 특정시점의 재정상태를 알 수 있게 나타낸 재무제표임.

- 재정운영표는 프로그램별 원가를 계산해서 얼마의 원가로 얼마의 성과를 냈는지를 보여주기 위한 보고서로 기업의 손익계산서와 유사함. 다만, 손익계산서는 당기순이익이 양(+)으로 표시되는 반면, 재정운영표에는 재정운영결과 손실이 양(+)으로 표시된다는 점이 상이함.

- 순자산변동표는 순자산의 한해 동안 변동내역을 표시하는 재무제표로서 기업의 자본변동표와 유사함.

나.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재무제표

(1) 재정상태표

○ 우주항공청 소관 일반회계와 기금을 통합한 2024회계연도 재무결산 결과, 자산은 413억 6,200만원, 부채는 100만원, 자산에서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은 413억 6,000만원으로 나타남.

○ 기말 자산은 조직설립일 대비 175억 8,500만원(74.0%) 증가하였는데, 이는 선급비용 등의 감소에 따른 유동자산 9억 1,300만원 감소, 임차개량자산 등의 취득에 따른 일반유형자산 66억 600만원 증가, 장기임차보증금 등의 취득에 따른 기타비유동자산 128억 3,9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함.

○ 기말 부채는 조직설립일 대비 100만원(순증) 증가하였는데, 선수수익 증가 등에 따른 유동부채 100만원 증가 등에 기인함.

○ 기말 순자산은 조직설립일 대비 175억 8,300만원(순증) 증가하였음.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결산 재정상태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도말 기준 (A)	조직설립일 기준 (B)	증 감	
			금액(C=A-B)	C/B
자산합계(a)	41,362	23,777	17,585	74.0
1. 유동자산	702	1,615	(913)	(56.5)
2. 투자자산	-	-	-	-
3. 일반유형자산	24,937	18,331	6,606	36.0
4. 사회기반시설	-	-	-	-
5. 무형자산	2,885	3,831	(946)	(24.7)
6. 기타비유동자산	12,839	-	12,839	순증
부채합계(b)	1	-	1	순증
Ⅰ. 유동부채	1	-	1	순증
Ⅱ. 장기차입부채	-	-	-	-
Ⅲ. 장기충당부채	-	-	-	-
Ⅳ. 기타비유동부채	-	-	-	-
순자산(a-b)	41,360	23,777	17,583	73.9

(2) 재정운영표

○ 우주항공청의 2024회계연도 재정운영결과는 3,599억 8,400만원으로, 재정운영순원가에서 비교환수익 등을 차감한 금액임.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결산 재정운영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금액 (C=A-B)	비 율 (C/B)
Ⅰ. 프로그램 순원가	342,056	-	342,056	순증
Ⅱ. 관리운영비	20,492	-	20,492	순증
Ⅲ. 비배분비용	-	-	-	-
Ⅳ. 비배분수익	2,564	-	2,564	순증
Ⅴ. 재정운영순원가(Ⅰ+Ⅱ+Ⅲ-Ⅳ)	359,984	-	359,984	순증
Ⅵ. 비교환수익 등	-	-	-	-
Ⅶ. 재정운영결과(Ⅴ-Ⅵ)	359,984	-	359,984	순증

○ 프로그램 순원가는 3,420억 5,6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프로그램 총원가가 3,420억 5,600만원 발생한 것에 기인함.

○ 관리운영비는 204억 9,200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인건비, 복리후생비, 기타관리운영비 등으로 구성됨

○ 비배분수익이 25억 64백만원 발생하였는데, 이는 지출금반납금수익 등이 발생한 것에 기인함.

(3) 순자산변동표

○ 우주항공청의 2024회계연도 순자산변동표에 따르면, 기말순자산은 413억 6,000만원임.

<2024회계연도 우주항공청 결산 순자산변동표>

(단위: 백만원, %)

구 분	2024년(A)	2023년(B)	증 감	
			금액 (C=A-B)	비 율 (C/B)
Ⅰ. 기초순자산	23,777	-	23,777	순증
Ⅱ. 재정운영결과	359,984	-	359,984	순증
Ⅲ. 재원의조달및이전	377,596	-	377,596	순증
Ⅳ. 조정항목	-28	-	-28	순감
Ⅴ. 기말순자산 (Ⅰ-Ⅱ+Ⅲ+Ⅳ)	41,360	-	41,360	순증

Ⅱ. 우주항공청 소관 결산 및 예비비 지출 검토의견

【 일반회계 · 예비비 】

(1)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7118-251): 예비비로 편성된 일반용역비의 전용 및 정책연구비 전액 이월 부적절

○ 우주항공청은 예비비로 편성된 일반용역비 예산을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의 원칙에 맞지 않게 조정하였으므로, 향후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청은 예산집행지침의 원칙에 맞지 않게 예비비를 전용하고 정책연구비를 전액 이월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는 우주항공청 기획재정담당관, 행정법무담당관, 국제협력관, 정보화담당관 등 부서 운영에 소요되는 기본경비로, 2024년 예산현액 8억 7,700만원 중 4억 6,100만원(52.6%)을 집행하였음.

- 이 중 일반용역비(210-14목)는 예비비로만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는데, 이 중 2억 2,200만원을 이전용한 후 6,200만원(예비비 대비 18.0%)을 집행하였음.

- 또한, 정책연구비(260-02목)은 예산 및 예비비 편성 없이 이전용

으로 9,000만원을 확보한 후 예산현액 9,000만원을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하였음.

<2024년도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83	83	-	△189	982	877	461	110	306	626
□ 세출예산비목										
○ 일반용역비 (210-14)	-	-	-	△220	345	125	62 [62]	20	43	-
○ 정책연구비 (260-02)	-	-	-	90	-	90	-	90	-	-

자료: 우주항공청, 2025. 6.

나) 검토의견

□ 예비비로 편성된 일반용역비의 전용 부적절

○ 세부사업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210-14목)는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예비비 예산 3억 4,500만원을 편성하였음.

○ 우주항공청은 동 예비비 이 중 2억 2,000만원(예비비 대비 63.8%)을 전용하였는데, 그 세부내역을 살펴보면, 1억 1,000만

원은 “총액비대상 우주항공산업국 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210-14목)로, 2,000만원은 “총액비대상 우주수송부문장비기본경비” 중 일반용역비(210-14목)으로 내역변경하였고, 9,000만원은 동 세부사업 내 정책용역비(260-02목)로 전용하였음.

<일반용역비(210-14) 예산 조정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날짜)	~에서		금액	~으로		이·전용 등 상세 사유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세부사업 명 (사업코드)	목세목 코드	
내역변경 ('24.12.3.)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251)	210-14	△90	총액비대상 우주항공산업국 기본경비(253)	210-14	• 정책연구 추진에 따른 내역변경 - 공공분야 위성 발사체 개발 서비스 등의 민간중심 전환 방안 연구(90백만)
내역변경 ('24.12.3.)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251)	210-14	△20	총액비대상 우주항공산업국 기본경비(253)	210-14	• 스페이스 해커톤 행사지원에 따른 일반용역비 내역변경(20백만)
내역변경 ('24.12.16.)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251)	210-14	△20	총액비대상 우주수송부문장 기본경비(254)	210-14	• 임무지원단 사업기획위원회 운영 위탁용역 추진에 따른 일반용역비 내역변경(20백만)
전용 ('24.12.4.)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251)	210-14	△90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251)	260-02	• 정책연구 추진에 따른 전용 -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운용 세부방안 연구 추진(90백만)

자료: 우주항공청.

○ 한편, 예비비는 「국가재정법」 제22조[1]에 따라 일반회계와 분리하여 계상되는 예외적인 제도로서, 전년도에 예산안을 국회에

1) 「국가재정법」 제22조(예비비) ①정부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예산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다만, 예산총칙 등에 따라 미리 사용목적을 지정해 놓은 예비비는 본문에도 불구하고 별도로 세입세출예산에 계상할 수 있다.

제출하여 심사 받는 예산과 달리 「국가재정법」 제51조[2]에 따라 기획재정부장관이 사용계획명세서를 제출하고, 제52조[3]에 따라 사용명세서를 사후적으로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예산집행지침」[4]에서도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사업이나 타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이러한 「국가재정법」과「예산집행지침」의 원칙에 맞지 않게 당초 편성된 일반용역비에 대한 예비비(3억 4,500만원)의 63.8%에 해당하는 금액을 조정하였음.

---

2)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국가재정법」 제51조(예비비의 관리와 사용)** ①예비비는 기획재정부장관이 관리한다.
②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의 사용이 필요한 때에는 그 이유 및 금액과 추산의 기초를 명백히 한 명세서를 작성하여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대규모 재난에 따른 피해의 신속한 복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0조의 규정에 따른 피해상황보고를 기초로 긴급구호, 긴급구조 및 복구에 소요되는 금액을 개산(槪算)하여 예비비를 신청할 수 있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른 예비비 신청을 심사한 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조정하고 예비비사용계획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④일반회계로부터 전입받은 특별회계는 필요한 경우에는 일반회계 예비비를 전입받아 그 특별회계의 세출로 사용할 수 있다.

3) **「국가재정법」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①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명세서를 작성하여 다음 연도 2월말까지 기획재정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된 명세서에 따라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작성한 후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 대통령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기획재정부장관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의 승인을 얻은 총괄명세서를 감사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④정부는 예비비로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여 그 승인을 얻어야 한다.

4)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2024.1., p.142..

○ 특히 우주항공청의 예비비 편성이 2024년 4월에 이루어졌는데, 개청(2024년 5월 27일) 이후 2024년 예산의 집행기간이 7개월 남았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예비비 예산은 당초 편성할 때 최대한 집행이 가능한 용도로 면밀하게 편성하는 것이 바람직하였을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예비비로 편성된 일반용역비 예산을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의 원칙에 맞지 않게 조정하였으므로, 향후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정책연구비 전액 이월 부적절

○ 세부사업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중 정책연구비(260-02목)는 당초 예산 및 예비비가 편성되지 않았으나,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목) 예비비 중 9,000만원을 전용하였음.

○ 해당 예산 9,000만원은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 운용을 위한 세부방안 연구용역”에 집행되었는데, 동 계약이 2024년 12월에 이루어지면서 9,000만원은 전액 다음 연도로 이월되었음.

<정책연구비(260-02목)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세부사업명	과제명	계약액	집행액	이월액	계약기간	수행기관
총액비대상 기획조정관 기본경비	우주항공진흥기금 설치 운용을 위한 세부방안 연구용역	90	-	90	’24.12.9. ~ ’25.12.8.	한국조세재정연구원

자료: 우주항공청.

○ 한편, 「국가재정법」 제2조는[5]은 국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 제3조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

5)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으로 충당하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예산집행지침」[6]은 예비비는 예비비사용명세서에 정해진대로 집행되어야 하며, 원칙적으로 타사업이나 타비목으로 이·전용할 수 없도록 하고, 예비비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음.

○ 그런데, 우주항공청은 이러한 예산집행지침의 원칙에 맞지않게 예비비로 편성된 일반용역비(210-14목) 9,000만원을 정책연구비(260-02목)로 전용한 후 동 예산을 전액 다음연도로 이월하였음.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예산집행지침의 원칙에 맞지 않게 예비비를 전용하고 정책연구비를 전액 이월하였는데,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6)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2024.1., pp.142~143..

(2)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1333-302): 사업 집행 관리 체계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 이월 부적절

○ 우주항공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연구개발 출연금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는 우주경제 시대 대비 민간 주도 우주개발 역량 강화 및 자생적 생태계 조성을 위한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100억원 중 95억 1,000만원(95.1%)을 집행하였음.

-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을 2024년에 내역사업별 연구개발기관 5곳에 연구개발비 95억 1,000만원을 교부하였고, 연구개발기관은 9억 1,500만원(9.6%)을 실집행하였음.

<2024년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우주산업 클러	10,000	10,000	9,510	9,510	-	9,510	915	8,597	0	23,000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민간발사장 구축	2,000	2,000	2,000	2,000	0	2,000	109	1,893	0	2,600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2,500	2,500	2,500	2,500	0	2,500	411	2,089	0	10,000
○발사체기술사업화 센터 구축	1,500	1,500	1,500	1,500	0	1,500	81	1,419	0	3,600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1,500	1,500	1,500	1,500	0	1,500	0	1,500	0	3,200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2,000	2,000	2,000	2,000	0	2,000	304	1,696	0	3,600
○사업단운영비 (기획평가관리비)	500	500	10	10	0	10	10	0	0	-
□ 세출예산비목										
○ 연구개발활동비 등(360-05)	9,500	9,500	9,500	9,500	0	9,500	905	8,597	0	23,000
○ 연구개발기획평가 관리비(360-06)	500	500	10	10	0	10	10	0	0	-

자료: 우주항공청, 2025. 6.

나) 검토의견

□ 사업 집행 관리 체계 변경에 따른 연구개발 출연금 이월 부적절

○ 세부사업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은 민간발사장 구축, 위성개발혁신 센터 구축 등 6개 세부사업의 2024년도 실집행률[7]이 전반적으로 저조하다는 문제가 있음.

7) 실집행률이란 예산액 대비 출연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이 집행한 금액임.

○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위성개발혁신 센터 구축”은 출연기관에 15억 전액 집행되었으나, 실집행액이 없고,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은 출연기관에 교부된 15억원 중 8,100만원(5.4%), “민간발사장 구축”은 교부된 20억원 중 1억 900만원(5.5%)가 집행되었음.

○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은 교부된 20억원 중 3억 400만원(15.2%),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은 교부된 25억원 중 4억 1,100만원(16.4%)만 집행되었으며, 이러한 집행 저조에 따라 기획평가비는 5억원 중 1,000만원(2%) 집행되었음.

<2024년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R&D) 사업 세부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 사업명	내역 사업명	비목	2024			2025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우주산업 클러스터 삼각체제 구축사업 (R&D)	민간발사장 구축	360-05	2,000	2,000	100	2,600	2,600	100
			[2,000]	[109]	[5.5]	[4,491]	-	-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360-05	1,500	1,500	100	3,600	3,600	100
			[1,500]	[81]	[5.4]	[5,019]	-	-
	우주환경시험시설 구축	360-05	2,500	2,500	100	10,000	4,250	42.5
			[2,500]	[411]	[16.4]	[12,089]	-	-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	360-05	1,500	1,500	100	3,200	3,200	100
			[1,500]	[0]	[0]	[4,700]	-	-
	우주기술혁신 인재양성센터 구축	360-05	2,000	2,000	100	3,600	3,600	100
			[2,000]	[304]	[15.2]	[5,296]	-	-
	기획평가비	360-06	500	10	2	-	-	-

주: [ ]는 출연기관의 실집행액임.
자료: 우주항공청.

○ 이러한 집행부진 사유에 대하여 우주항공청은 사업 적정성 검토 기간이 연장되었고, 2024년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당초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여 수행하던 사업을 우주항공청이 직접 수행하는 방향으로 집행 관리 체계가 변경되면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었다고 설명하였음.

- 우주항공청은 2024.10.30～12.2.에 사업비를 교부하여 주관기관에서 기본계획 수립 준비, 인력 확충 등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였고, 설계·건축·장비심의 기간 등을 단축하여 전체 일정에는 문제 없이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며, 2024년 이월 예산 86억원을 금년도 전액 집행하겠다고 설명하였음.

○ 한편, 「예산집행지침」[8]은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연구비를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해야 하며, 불가피한 사유로 이월하는 경우에는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을 받아 이월할 수 있도록 하면서,「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9]에 따

8)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2024.1., p.205.

9)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

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는 승인을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음.

○ 이는 국가연구개발사업(R&D)은 장기간 연구가 수반되는 경우가 많아 단년도 예산 편성·집행 방식에 따라 예산을 편성하고 성과를 제출하는 과정이 다소 맞지 않았고, 이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R&D)을 추진하는 과정 전반에서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였기 때문임.

○ 그런데, 동 사업의 경우 우주항공청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10]에 따른 전문기관인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연구주관기관을 선정하지 않고, 우주항공청이 직접 선정하는 "관리 체계"의 변경에 따라 사업이 지연된 상황임.

- 한국연구재단을 통해 연구주관기관을 선정할 경우, 먼저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한 후 한국연구재단이 연구주관기관을 공모하여 선정함.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변경·해약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22조(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제9조부터 제19조까지, 제21조, 제31조제3항, 제33조제1항, 제34조제2항에 따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행하는 기관을 전문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하 생략)

- 반면, 우주항공청은 직접 연구주관기관에 출연하는 방식으로, 우주항공청 이관 후 내역사업 “민간발사장 구축”은 항공우주연구원이, “우주환경시험 시설 구축”, “발사체기술 사업화센터 구축”은 각각 한국산업기술시험원과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이, “위성개발혁신센터 구축”은 경남테크노파크가, “우주기술혁신인재양성센터 구축”은 KAIST에 출연하여 수행하고 있음.

○ 이러한 사업비 지연 사유는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따른 지연과는 무관하다는 점에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R&D 출연금에 대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와는 상이함.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은 2025년에도 “민간발사장 구축”, “발사체기술사업화센터 구축” 등 4개 사업에 대한 예산액을 전액 교부하였는데, 2025년에는 2024년에 교부된 후 이월된 예산 86억원을 집행하여야 하는 상황이고, 현재까지 교부된 2025년 예산은 실집행액이 존재하지 않는 상황임.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및 예산집행지침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에 대한 이월을 허용하고 있는 취지에 대해 면밀히 검토하여, 이에 해당하지 않는 사유로 연구개발 출연금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3)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1339-301): 비 R&D 사업의 출연금 이월 부적절

○ 우주항공청은 향후 연구개발사업(R&D)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게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은 자체중량 150kg을 초과하는 특수목적(군사・재난・의료 등)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을 위해 주요 시험평가 장비구축 및 시험평가 지원체계 구축하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38억 5,000만원을 전액 집행하였음.

- 동 사업의 예산은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었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출연금을 교부받았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을 사업수행자로 선정하여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이 실제 사업을 수행하였음.

<2024년도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3,850	3,850	3,850	3,850	-	3,850	3,850	-	-	-
□ 세출예산비목										
○ 사업출연금 (350-02)	3,850	3,850	3,850	3,850	-	3,850	3,850	-	-	-

자료: 우주항공청, 2025. 6.

나) 검토의견

□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필요

○ 동 사업은 2022년부터 수행하여 2024년에 종료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과 사업수행자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 사업을 수행할 때 선정된 기관임.

○ 동 사업의 실제 수행자인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2024년에 예산 38억 5,000만원 중 11억 2,300만원(29.2%)을 집행하고, 27억 2,700만원은 2025년으로 이월하여 2025년 8월 현재까지 집행이 이루어지고 있음.

○ 우주항공청은 이러한 집행 부진에 대해 사업 부지 변경으로 인하여 공사가 지연되면서 장비 구매비, 공사비 등의 집행이 지연되었으며 2025년 10월 중 80%, 연말까지 전액 집행 예정이라고 설명하였음.

<2024년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구분	2022			2023			2024			2025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50-02	집행	3,500	3,500	100	3,150	3,150	100	3,850	3,850	100	-	-	-
	실집행	3,500	3,500	100	3,150	3,150	100	3,850	3,850	100	2,727	1,520	55.7
	실실집행 (24년 12월)	3,500	3,500	100	3,150	3,150	100	3,850	1,123	29.2	-	-	-
	실실집행 (25년 6월)	-	-	-	-	-	-	3,850	1,123	29.2	-	-	-

주: 실집행액은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집행한 금액이고, 실실집행은 실제 사업수행자인 산업기술시험원에서 집행한 금액임.
자료: 우주항공청.

○ 한편, 「국가재정법」 제2조는[11]은 국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고, 제48조[12]에

11)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12)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

서 세출예산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다만, 연구개발사업(R&D)의 경우에는 「예산집행지침」[13]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연구비를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14]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월을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R&D)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이월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13)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2024.1., p.205.

14)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변경·해약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그런데, 세부사업 “특수목적 유·무인드론 산업생태계 조성 지원”은 연구개발사업(R&D)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개발사업에 대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고, 「국가재정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당해 연도에 집행되지 않은 금액을 자체 이월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임.

○ 우주항공청은 이에 대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15]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 제30조제8항[16]에 근거하여 이월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그런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제2항[17]은 주관연구기관

---

15)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16)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⑧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단계 내에서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연차에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계속비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 전문기관은 계속비가 편성된 경우 동일 항목의 당해연도 본예산보다 계속비가 우선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1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 조항으로, 출연금의 이월을 허용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불과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월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향후 연구개발사업(R&D)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게 집행잔액을 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4)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1339-302): 비 R&D 사업의 출연금 이월 부적절

○ 우주항공청은 향후 연구개발사업(R&D)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집행잔액을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게 이월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은 국내 핵심부품 기업들이 개발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에 대한 성능 및 신뢰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험평가센터와 시험 장비를 구축하는 등 UAM-AAV 부품시장 선점 및 국내 부품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조기에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30억원 중 28억 8,000만원(96.0%)을 집행하였음.

- 동 사업의 예산은 사업출연금(350-02목)으로 편성되었고,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사업출연금을 교부받았으며,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 한국자동차연구원을 주관기관으로 선정하여 출연금을 집행하였고 이후 2024년 10월 우주항공청에 사업관리가 이관되며 기획평가 관리비 1억 2,000만원(4%)을 불용처리하였음.

<2024년도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3,000	3,000	-	-	-	3,000	2,880 [813]	-	120	2,900
□ 세출예산비목										
○ 사업출연금 (350-02)	3,000	3,000	-	-	-	3,000	2,880 [813]	-	120	2,900

자료: 우주항공청, 2025. 6.

나) 검토의견

□ 사업 지연에 따른 집행관리 철저 필요

○ .동 사업은 2024년에 우주항공청이 개청되면서 산업통신자원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었는데, 출연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동 사업을 수행할 때 선정된 기관임.

- 사업수행자는 한국자동차연구원이 주관기관이고,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서대학교가 공동수행자임.

○ 동 사업의 주관연구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은 2024년에 28억 8,800만원 중 8억 1,300만원(28.2%)만 집행되었고, 2025년 예산 29억원과 2024년 집행잔액 20억 6,700만원을 2025년 현재 집행

하고 있으며, 2025년 예산현액 49억 6,700만원 중 3억 6,700만원(7.4%) 집행되었음.

<2024년 그린 UAM-AAV 핵심부품 시험평가 기반구축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구분	2024			2025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50-02	집행	3,000	2,880	96	2,900	2,900	100
	실집행	2,880	2,880	100	4,967	367	7.4
	실실집행(24년 12월)	2,880	813	28.2			

주1: 실집행액은 출연기관인 한국자동차연구원에서 집행한 금액이고, 실실집행은 실제 사업수행자인 사업시행주체(주관은 한국자동차연구원이고, 충남테크노파크,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서대학교가 공동수행자임)에서 집행한 금액임.

주2: 2025년 실집행 예산액 49억 6,700만원은 2024년 집행잔액 20억 6,700만원과 2025년 예산액 29억원의 합계임.

자료: 우주항공청.

○ 우주항공청은 이러한 집행 부진에 대해 산업통산자원부의 협약 체결 지연(6월 중→8월31일)에 따른 장비 선정 평가가 지연(9월 중→12월)되었고, 2024년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이관되면서 누락된 산업통상자원부 K-PASS시스템 사용권한 획득이 지연되면서 2025년 3월에 동 사업을 수행하기 시작하였고, 5월에 장비를 발주하였기 때문이고, 2025년 내에 사업비 집행이 가능하다고 설명하였음.

- K-PASS시스템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서 운영하는 과제관리 시스템으로, 기존 사업을 이관받으면서 과제 관리시스템이 필

요하였기 때문에 사용권한이 필요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한편, 「국가재정법」 제2조는[18]은 국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도록 하고 있고, 제48조[19]에서 세출예산의 이월은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음.

○ 한편, 연구개발사업(R&D)의 경우에는 「예산집행지침」[20]에서 연구개발 출연금을 지원받은 기관은 당해 회계연도 연구비를 당해 회계연도에 집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면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21]에 따라 다년도 협약을 체결한 연구개발과

---

18)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19) **「국가재정법」 제48조(세출예산의 이월)** ①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 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
②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월액은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없으며, 제2호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재이월할 수 없다.
1. 명시이월비
2. 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아니한 그 부대경비
3.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까지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공익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5.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20)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2024.1., p.205.

2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0조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이를 수행하는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때에는 선정된 연구개발기관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이 경우 협약의 기간은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전체 연구개발기간으로 한다.
1. 연구개발과제 수행 계획(제13조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에 대한 개괄적인 계획을 포함한다)
2. 중앙행정기관의 권한·의무 및 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연구개발기관과 연구자의 권리·의무
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하는 사항
4. 그 밖에 연구개발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협약 당사자는 연구개발기관을 추가·변경하거나 연구책임자,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등 연구개발과제 수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대통

제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이월을 허용하고 있음.

○ 이에 따라 연구개발비(R&D)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경우에는 다년도 협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더라도 법적 근거 없이 이월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음.

○ 우주항공청은 이에 대해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제2항 및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산업통상자원부고시)」제30조제8항[22]에 근거하여 이월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그런데,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제2항[23]은 주관연구기관 및 참여기관과 협약을 체결하고 비용을 출연할 수 있도록 하는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협의하여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협약의 내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협약 당사자 간의 통보로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이 변경된 것으로 본다.
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2조제3항 또는 제15조제1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가 중단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 협약을 해약하고 연구개발비 정산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의 협약 체결·변경·해약의 절차 및 제4항에 따른 조치의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2)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제30조(연구개발비의 관리 및 사용)** ⑧ 연구개발기관은 해당 단계 내에서 연차별 연구개발비 사용잔액 현금을 다음연차에 계속비로 편성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 사용실적 보고 시 계속비 편성내역을 포함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또한,전문기관은 계속비가 편성된 경우 동일 항목의 당해연도 본예산보다 계속비가 우선하여 사용될 수 있도록 연구개발비를 관리하여야 한다.

2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1조(산업기술개발사업)** ②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연구기관, 대학,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단체 또는 기업 등으로 하여금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수행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자와 산업기술개발사업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해당 사업의 수행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1. 산업기술개발사업을 주관하여 수행하는 자(이하 "주관연구기관"이라 한다)
2. 산업기술개발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주관연구기관 외에 해당 산업기술개발사업에 참여하는 자(이하 "참여기관"이라 한다)

근거 조항으로, 출연금의 이월을 허용한다는 근거는 어디에도 없으며, 산업통상자원부고시에 불과한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에 따라 「국가재정법」에서 허용하지 않는 이월이 허용된다고 보기 어려움.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향후 연구개발사업(R&D)으로 편성되지 않은 사업의 집행잔액을 「국가재정법」에 맞지 않게 이월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5)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1343-301):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하여 연구협약을 체결 부적절

○ 우주항공청은 정책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하였는데, 향후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 연구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는 우주항공분야 중장기 미래 전략과 정책을 수립하고, 체계적인 임무 설정을 위한 선행·탐색연구를 수행하는 사업으로, 2024년에 예비비가 80억원 편성되어 전액 집행하였음.

-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을 2024년에 한국연구재단에 출연하여 집행하고 있고, 한국연구재단은 교부된 출연금을 전액 집행하였음.

<2024년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	-	-	-	-	8,000	8,000	8,000	-	-	9,650
□ 세출예산비목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연구개발연구 활동비등(360-05)	-	-	-	-	8,000	8,000	8,000	-	-	9,650

자료: 우주항공청, 2025. 6.

나) 검토의견

□ 정책연구과제에 대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위반하여 연구협약을 체결 부적절

○ 세부사업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R&D)”는 연구개발연구 활동비등(360-05목)으로 편성되어 한국연구재단에서 수행하고 있는데, 실제 집행 내역을 보면 우주항공청이 직접 수행·관리하여야 하는 정책연구과제의 성격에 해당하는 과제들이 동 사업에서 수행되고 있는 문제가 있음.

○ 「예산안 편성지침」[24]은 정책연구비(260-02목)를 각 부처에서 정책 개발을 위해 추진하는 정책연구용역(학술연구 포함) 관련 비용으로 정의하고, 과학기술·생산기술 및 정책개발에 관한 연구를 이에 포함하고 있음.

○ 또한,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제4호[25]는 “정책의 개발 또

24)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편성 지침」, 2023.5., p.243.

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동 법 제9조부터 제18조[26]를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어, 연구개발협약의 대상이 아님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2024년에 우주항공청이 수행하고 있는 동 사업의 과제들을 살펴보면, 이 중 "기획"으로 분류된 "항공혁신 R&D 포지셔닝 및 로드맵 수립"의 1개 과제와 "정책"으로 분류된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평가운영을 통한 우주항공청 사업관리 방안 마련", "우주항공 법제 정책연구" 등 5개 과제는 「예산안 편성지침」에서 "정책연구비(260-02목)으로 분류한 정책연구용역 관련 비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제3조에 따라 연구개발협약의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임.

25)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적용 범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에 관하여는 제9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4. 정책의 개발 또는 주요 정책현안에 대한 조사·연구 등을 목적으로 추진되는 사업

26) 제2장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제9조(예고 및 공모 등), 제10조(연구개발과제 및 수행 연구개발기관의 선정), 제11조(연구개발과제 협약 등), 제12조(연구개발과제의 수행 및 관리), 제13조(연구개발비의 지급 및 사용 등), 제14조(연구개발과제의 평가 등), 제15조(특별평가를 통한 연구개발과제의 변경 및 중단), 제16조(연구개발성과의 소유·관리), 제17조(연구개발성과의 활용), 제18조(기술료의 징수 및 사용)임.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사업 중 정책연구에 해당하는 과제 현황>

(단위: 백만원, %)

연번	분류	연구개발주제명	주관연구 개발기관	연구기간	연구비	실실 집행률
R&D 항공1	기획	항공혁신 R&D 포지셔닝 및 로드맵 수립	주식회사 과학기술전략 연구소	2024-10-01~ 2025-09-30(12개월)	500	31
R&D 혁신1	정책	뉴스페이스 선도를 위한 혁신적 연구개발제도 설계	인터젠컨설팅(주)	2024-10-01~ 2025-09-30(12개월)	200	76
R&D 임무	정책	신규프로젝트 탐색연구 평가운영을 통한 우주항공청 사업관리 방안 마련	한국연구재단	2024-09-19~ 2024-12-06(3개월)	50	100
정책1	정책	우주항공정책기능 통합 수행체계 수립 I (정책, 산업육성, 기술개발 분야)	한국항공우주 연구원	2024-10-01~ 2025-07-31(10개월)	1,100	50
정책2	정책	우주항공정책기능 통합 수행체계 수립 II (인재양성, 우주과학, 우주위험 분야)	한국천문연구원	2024-10-01~ 2025-07-31(10개월)	700	40
정책3	정책	우주항공 법제 정책연구	과학기술정책 연구원	2024-10-01~ 2025-07-31(10개월)	200	12

자료: 우주항공청.

○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주항공청은 2024년에 정책과제로 분류된 과제(6건)을 협약으로 체결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3조에 맞지 않게 수행하였음.

○ 우주항공청은 동 사업의 2025년 예산을 2024년과 같이 편성하지 않고 시험연구비(210-13목), 일반연구비(260-01목), 연구개발연구활동비등(360-05목)으로 나누어 편성·집행하고 있어 동 사업의 성격이 다소 혼란스러운 상황임.

<2024년·2025년 신규 프로젝트 탐색연구(R&D) 편성 및 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세부사업명	비목	2024			2025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신규 프로젝트 탐색연구(R&D)	210-13	-	-	-	2,000	1,062	53.1
	260-01	-	-	-	7,000	2,530	36.1
	360-05	8,000	8,000	100	650	650	100

자료: 우주항공청.

○ 다만, 연구용역(260목)으로 편성되는 예산은 다년도 연구개발(R&D)의 성격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고,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의 적용을 받는다고 보기 어려우며, 정책연구용역의 경우 이와 관련된 관리 절차가 별도로 존재한다는 점에서 정책연구용역은 별도로 편성하여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정책연구용역에 해당하는 과제에 대해 연구협약을 체결하여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을 위반하였는데, 향후 정책연구 과제에 대해 연구협약을 체결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6)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R&D)(1733-306): 종료사업에 대한 이관 부적절

○ 우주항공청은 사업이 중단되어 정산 절차만 남은 사업을 이관 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R&D)”은 고중량 화물 탑재 및 장거리·장시간 비행이 가능한 중형 드론을 개발하여 공중을 활용한 고속 배송으로 운송시간 절약을 통해 물류시장에서 국제경쟁력 확보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액 25억 7,300만원(0.0%)을 전액 불용하였음.

- 동 사업의 2024년도 예산은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사업 중단을 확정하면서, 출연금을 기획재정부로부터 교부 받지 않았음.

<2024년도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R&D)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2,573	2,573	-	2,573	-	2,573	-	-	2,573	-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
	과기정통부			사업수행기관						
	예산액		집행액	교부액	전년도 이월액	예산 현액	실 집행액	차년도 이월액	불용액	
	본예산	추경								
카고드론 기술개발(R&D)										
□ 세출예산비목										
○ 연구개발활동비등 (360-05)	2,573	2,573	-	2,573	-	2,573	-	-	2,573	-

자료: 우주항공청, 2025. 6.

나) 검토의견

□ 종료사업에 대한 이관 부적절

○ 동 사업은 2021년부터 2023년까지 1단계 연구개발을 수행할 예정이었으나, 2023년에 단계평가 결과 사업이 중단되면서, 2024년 예산은 전액 불용하였음.

○ 우주항공청은 기존에 활용 예정이었던 상용 수소연료전지 엔진에 대한 실제 제원 시험 결과 본 사업에 적용이 어려워 자체 개발이 불가피하였으나, 개발에 필요한 비용 증가 및 일정 지연 발생으로 인해 당초 최종 목표 달성이 어려울 것으로 단계평가에서 판단되어 사업이 중단되었다고 설명하였음.

<2024년 수소연료전지 기반 탑재중량 200kg급 카고드론 기술개발(R&D) 사업 실집행 현황>

(단위: 백만원, %)

비목	구분	2022			2023			2024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예산액	집행액	집행률
360-05	집행	5,754	5,754	100	4,795	4,795	100	2,573	-	-
	실집행	5,754	5,754	100	4,795	4,795	100	-	-	-

주: 실집행액은 출연기관인 한국산업기술기획평가원에서 집행한 금액임.
자료: 우주항공청.

○ 이에 따라 동 사업은 2023년에 과제가 종료되었고, 이후 사후 정산 절차만 남은 상황이었는데, 2024년에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우주항공청으로 이관되었음.

○ 이는 우주항공청이 개청하면서 산업통상자원부 사업 중 항공 분야에 해당하는 사업에 해당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지 않고 기계적으로 이관하였기 때문임.

○ 그런데, 사업 수행, 출연, 단계평가 등 모든 사업 진행 및 중단과 관련된 절차를 산업통산자원부에서 수행하였고, 이미 예산 집행도 중단되었으며, 사후 정산 절차만 남은 사업을 이관할 경우 이관 받은 우주항공청이 그 사업의 내용을 모두 알기 어려워 정산 과정에도 참여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음.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사업이 중단되어 정산 절차만 남은 사업

을 이관 받은 것은 적절하지 않으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7) 우주항공 정보화(7123-250): 예비비에 대한 집행 관리 부적절

○ 우주항공청은 예비비 편성 시 계획했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연말에 계약하여 이월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미리 계획했던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가) 사업 개요

○ 세부사업 “우주항공 정보화”는 우주항공청 정보시스템의 안정 운영 및 최신 IT기술을 활용한 혁신적 업무모델 구축, 소속·산하기관의 사이버 침해사고 예방능력 강화 및 피해 최소화 등을 하려는 사업으로, 2024년 예산현액 88억 3,700만원 중 79억 3,400만원을 집행(89.8%)하였음.

- 동 사업은 당초 예산이 편성되지 않았으나, 2024년 6월 우주항공청 개청에 따른 예비비가 84억 3,700만원 편성되었고, 4억원을 전용받았음.

<2024년도 우주항공 정보화 사업 결산 현황>

(단위: 백만원)

사업명	2024년									2025년 예산액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이전용 등	예비비	예산 현액	집행액 (실집행액)	다음년도 이월액	불용액	
	당초	변경								
□ 우주항공 정보화	-	-	-	400	8,437	8,837	7,934.2	853	49.8	7,308

자료: 우주항공청, 2025. 6.

나) 검토의견

□ 예비비에 대한 집행 관리 부적절

○ 세부사업 “우주항공 정보화”는 예비비로 편성된 4억 1,500만원 중 우주항공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 1억 4,300만원, 우주항공청 대표 누리집 1억 6,200만원 등 3억 500만원을 이월하였음.

<2024년 예비비 편성 및 집행 세부 내역>

(단위: 백만원)

2024년 예비비 편성 내역		2024년 집행 내역	
편성 내역	금액	집행 내역	금액
우주항공 정보화 연구용역비	415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50	**-우주항공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12월~25년 6월)**	**143**
-홈페이지 개발 등	244	-우주항공청 임시누리집 구축사업(4월~5월)	22
		-우주항공청 대표누리집 고도화사업(9월~25년 3월)	**162**
-정보보호수준진단 및 개선 등	21	-2024년 우주항공청 업무포털 기능개선 사업(12월)	20

자료: 우주항공청.

○ 「국가재정법」 제2조는[27]은 국가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하고, 제3조에서 회계연도 독립의 원

27) **「국가재정법」 제2조(회계연도)** 국가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한다.
제3조(회계연도 독립의 원칙)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한다.

칙에 따라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그 연도의 세입 또는 수입으로 충당하여야 하고 있고, 「예산집행지침」[28]은 예비비의 이월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게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특히 예비비로 편성된 예산은 당해 연도에 집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으나,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예비비 편성 단계부터 계획했던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2024년 12월이 되어서야 계약을 체결하고 다음연도 이월했다는 문제가 있음.

- 우주항공청은 우주항공청 대표누리집 고도화사업의 경우 임시 누리집을 우주항공청 개청 이전에 구축한 이후에 수행하기 위하여 이월한 것이라고 설명하였음.

○ 우주항공청은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의 이월에 대해 5월 말 개청 이후 조직 구성을 단계적으로 추진함에 따라 우주항공청 부서별 업무 분석에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었으며, 10월 사업발주 후 12월 계약 체결하였다고 설명하였음.

○ 그러나, 「국가재정법」 및 「예산집행지침」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예비비로 편성한 예산은 연내에 집행할 수 있도록 집행

28) 기획재정부, 「2024년도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집행 지침」, 2024.1., p.143..

관리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으므로, 예비비 편성시 계획했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12월에 계약하고 이월한 것은 부적절한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우주항공청은 예비비 편성 시 계획했던 정보화 전략계획 수립 사업을 연말에 계약하여 이월한 것은 부적절하므로, 향후 예산 편성시 미리 계획했던 사업이 이월되지 않도록 시정할 필요가 있음.

문 의 처
02) 6788-5236